

11. 土地管理 및 地域均衡開發 特別會計法 施行令中 改正令(案)立法豫告

건설교통부공고 제 1997-326호 1997. 9. 18

개 정 이 유

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개정법률('97. 8. 22. 공포)에서,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입, 처분등에 관한 사항과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의 용자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, 그 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상의 문제점도 함께 보완·개선하기 위함.

주요개정내용

1. 정부투자기관이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,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시행주체에 정부투자기관이 포함되도록 하고, 지역균형개발사업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함.
2. 이 회계소관 토지의 사용·임대는 토지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하되, 연가 사용료·임대료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.
3.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시장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하거나 처분하는

경우에 용도별·지역별 토지수급현황과 전망등을 감안하도록 하되,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.

4. 토지초과이득세로 물납받은 토지를 국세청에서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후 건설교통부로 무상관리환 하던 것을 국세청에서 바로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으로 등기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.
5.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의 용자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을 한국토지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농업진흥공사로 규정함.

주택회보